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9. 16.(금) 10:3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2년 9월 7일

○ 회부일자: 2022년 9월 13일

3. 제안이유

○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의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청렴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청렴도민감사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청렴도민감사관의 임기(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및 자격을 규정함(안 제4조)

○ 청렴도민감사관의 직무 수행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청렴도민감사관의 임기(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및 자격을 규정함(안 제4조)

○ 청렴도민감사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권한을 규정함(안 제6조)

- 청렴도민감사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제보 및 건의 사항의 접수부 등재 관리 및 처리결과의 통보 기한을 규정함(안 제8조)
- 청렴도민감사관의 책무와 제척·회피 사유를 규정함(안 제9조 및 안 제9조의2)
- 청렴도민감사관의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함(안 제10조)
- 청렴도민감사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이유

-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 「충청북도교육청 명예감사관제 운영 규칙」 제정에 이어, 2013년 「충청북도교육청 청렴감사관 운영 규칙」으로 개정을 통해 시행해 온 ‘청렴감사관’ 제도를 ‘청렴도민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목적임.
- 청렴도민감사관 제도를 통한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현재 유사한 주민 참여 감사관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7개 시, 도 교육청에서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음.

[타 시·도 교육청 시민감사관 법령 제정 현황]

연번	기관	법령명	공포일
1	서울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2018.10.04
2	경기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2016.11.08

연번	기관	법령명	공포일
3	인천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2015.01.05
4	대전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2016.02.19
5	세종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2015.06.22
6	전북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2012.06.08
7	충남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2016.05.30

- 특히, 최근 우리 사회가 공직자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충북교육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주는 청렴도민감사관제를 도입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음.

나. 주요내용

-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안 제4조의 임기 및 자격 규정에서는 그동안 해당 규칙에서 청렴감사관의 자격을 ‘감사 경험이 있는, 감사에 관한 전문 식견이 있는, 사회적 신망이 있고 청렴감사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개념적으로만 규정했던 내용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과 대학교 조교수 이상 재직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 시켜 감사와 관련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같은 조 2항에서는 청렴도민감사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 부분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 중 제1항에서는 청렴도민감사관이 수행할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제2항에서는 감사에 참여한 청렴도민 감사관이 별지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 청렴도민감사관이 직접 참여한 감사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됨.

- 안 제6조에서는 청렴도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면담,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개선 권고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담아 교육행정과 관련한 감사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 확보에 청렴도민감사관의 역할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에서는 청렴도민감사관의 감사와 관련된 건의·제보 사항을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토록 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제보 및 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효율적인 감사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음. 또한, 안 제8조에는 청렴도민감사관의 제보·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기한을 명시해 해당 사안 처리 지연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번 조례안에는 청렴도민감사관들의 전문분야별 경험과 지식을 감사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감사실무 관련한 연수 및 교육기회 제공 규정이 명기되지 않은 바, 담당부서에서는 청렴도민감사관에게 역량강화 연수 등 관련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열린 감사제도 운영의 효과를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다만, 이번 조례안에는 청렴도민감사관들의 전문분야별 경험과 지식을 감사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감사실무 관련한 연수 및 교육기회 제공 규정이 명기되지 않은 바, 담당부서에서는 청렴도민감사관에게 역량강화 연수 등 관련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열린 감사제도 운영의 효과를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